

2020학년도 학교 내 코로나19 대응 계획

이리동중학교

1 목적 및 대응 방향

1 목적

- 가.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위기 단계가 ‘심각’으로 격상(2.23.)됨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
- 나. 학교 내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·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의 집단 발생을 예방하고, 학교 구성원의 건강을 보호함

2 근거

- 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[지자체용] (중앙방역대책본부, 2020. 2. 20.)
- 나. 2020학년도 신학기 유초중고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학사운영 방안(교육부, 2020. 2. 25.)
- 다. 학생 감염병 예방·위기 대응 매뉴얼(교육부, 2016. 12.)
- 라. 학교보건법 제8조(등교중지), 동법 시행령 제22조(등교 등의 중지)

3 대응 방향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코로나19)는 임상양상,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‘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’을 적용하여 대응함

- 가. 학교 내 ‘코로나19 대책반’ 구성 및 역할 분담으로 코로나19에 체계적으로 대응
- 나. 코로나19 유증상자 파악, 환자 및 접촉자 관리를 통한 교내 감염병 전파 방지
- 다. 휴업, 학생 등교중지, 교직원 결근 등에 따른 유연한 학사 일정 변경 및 수업 결손 최소화
- 라. 손 씻기,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및 코로나19의 예방에 대한 교육 홍보 강화
- 마. 학생 및 학부모의 불필요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
- 바.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, 확진자에 대한 낙인효과 최소화
- 사. 질병관리본부, 교육부 및 교육지원청, 관할 보건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

2 코로나19 관련 대상자 관리

1 등교(출근)중지 대상자

코로나19로 관련 등교중지인 학생은 **출석인정**, 결근인 교직원은 **확진 시 병가**, 기타의 경우 **공가** 처리

| 대상자 | 정의 | 격리기간 (등교중지 기간) | 증빙서류 | 비고 |
|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확진환자 | 증상에 관계없이 진단검사에서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| 의사의 완치 소견이 있을 때까지 | 의사소견서, 입원치료통지서 등 | 병원격리* |
| 의사환자 | -중국, 홍콩, 마카오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(37.5°C 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목아픔 등)이 있는 자 -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-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 | 진단결과 음성이라도 증상발현일~14일간 | 격리통지서, 진료확인서, | 병원격리 자가격리 진단검사 우선 대상자 |
| 조사대상 유증상자 | -코로나19 발생국가, 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-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| | | |
| 접촉자 | 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 또는 조사대상유증상자와 접촉한 자 | 접촉일~14일간 | 격리통지서 등 | 자가격리 |
| 호흡기 유증상자 | 발열(37.5°C 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목아픔 등)이 있는 자 | 3~4일. 단 증상 호전 없으면 연장 가능 | 진료비계산서·영수증, 처방전, 약제비계산서·영수증 등 | 자가격리 국가위기 상황시 증 빙서류 |

* 환자 발생 추이에 따라 확진환자가 병원격리를 못하고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경우는 입원 시까지 우선으로 건강상태 파악

* 전담관리교사 지정 : 자율격리, 자가격리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우선 상황 파악

-학생 : 담임교사 (1일 2회) , 교사: 교감(1일 2회), 직원 : 행정실장(1일 2회)

2 선택적 등교(출근)중지 가능한 대상자

- 보건학적 고위험군* 속하는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, 담임교사의 승인을 받고 일정 기간 혹은 감염병 위험이 감소될 때까지 등교 중지 및 출석 인정
- 보건학적 고위험군* 속하는 교직원이 희망하는 경우, 일정 기간 혹은 감염병 위험이 감소될 때까지 대면 업무 배제 및 희망하는 경우 학교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자택 근무
- 선택적 등교(출근)을 하는 해당 학생 및 교직원은 증빙서류(진단서, 의사소견서 등) 제출

보건학적 고위험군: 임산부, 폐질환, 만성심혈관질환, 당뇨, 신장질환, 만성간질환, 악성종양, 면역저하자 등 단, 합병증 없는 고혈압, 경증의 만성질환으로 약물 복용자 제외



| 내 용 | 시 기 | 담당(부서) | 방 법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대책반 구성·운영 | 3월 ~ 경보 해제 | 전교직원 교무부 | °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코로나19에 실질적으로 대응 할 수 있게 대책반 및 역할 분담 °신학년 학생 및 교직원 비상연락망 구축 | 교직원 연수 |
| 학사 관련 안내 | 필요 시 | 교무부 | °필요 시 학사일정 변경 안내 문자 발송 ° 등교 전 안내 문자 발송(내용 예시) : 등교 전 가정에서 발열 유무 확인, 발열(37.5°C 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목아픔 등)이 있을 시 담임교사 에게 연락 후 3~4일간 등교중지 및 가정안정 | 학생의 발열 확인 1차: 가정 2차: 등교 후 학교에서 확인 |
| 예방교육 | 수시 | 보건교사 담임교사 | °코로나19 관련 교육자료 준비 °가정통신문, 방송교육, 게시판, 문자, 홈페이지 등을 계속적인 교육 °손 씻기, 기침예절, 다중시설 이용 자제, 마스크 착용, 유증상자 관리방법 등 코로나19 예방수칙 교육 | -학생 및 학부모의 불 안감 해소를 위한 정확 한 정보 제공 -지침 변경사항 수시 확인 및 안내 |
| 유증상자 능동감시 및 요보호 대상자 건강관리 | 매일 | 보건교사 담임교사 | °조회, 수업 중 호흡기 증상으로 담임교사 및 교과교 사에게 연락받은 학생 처치 :비교란 기준에 따라 일시적 관찰실로 격리· 조퇴 또 는 증상에 따른 투약 및 보건실 안정 °보건실 이용 학생 중 유증상자 선별 및 건강관리 °요보호 대상 학생 건강상담 °코로나19 발생 현황 통계 작성 및 교육지원청 보고 °필요 시 보건소 역학조사 협조 | -발열이나 호흡기증상 이 있는 경우 출석인정 등교중지 -유증상자는 3-4일 가 정에서 관찰 후 관찰보 건소나1339에 연락 후 안내에 따라 조치 |
| 일시 관찰실 (건강복지실) 운영 | 매일 | 보건교사 | °관찰실은 학교 상황, 보건교사 동선 등 고려하여 지정 °코로나19 유증상자를 담임교사 통해 학부모 연락 후 귀가 전까지 일시 격리, 관찰 °수시 소독 및 환기 | 필요 시 인력 지원 (상담교사 및 교육복지사) |
| 출결 관리 | 매일 | 담임교사 | °매일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목아픔 등)으로 인한 결석자는 2교시 후까지, 조퇴자는 종례 직후 보건실로 연락 °출석부 및 NEIS에 출석인정 처리 및 학생 재등교 시 증빙서류 받아 보관 | |
| 심리 상담 | 필요시 | 상담교사 | °심리적 피해 예방교육 (따돌림, 낙인효과 주의) °코로나19 관련 학생 심리 상담 | |
| 단체활동 제한 | 수시 | 학년부장 | 입학식, 현장체험학습, 학급 단합대회 등 각종 행사 연기·취소 | 학생 및 교직원 단체활 동 최소화 |
| 외부인 출입 관리 | 매일 | 행정실장 | °외부인 출입을 최대한 제한하고, 부득이 교내 출입 시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활용 하며 방문 대상자 에게 유선 연락 | -행정실에서 방문 대상자에게 유선 연락 |
| 학교 방역 | 매일 연중 | 담임교사, 특별실담당교사, 행정실 | °일상소독: 학급, 특별실 등 출입문 손잡이, 교탁 위, 키보드, 쓰레기통 주변 등 매일 소독제 분무 °임시소독: 환자 발생 등 필요 시 °정기소독: 계획에 따라 학교 전체 방역 소독 | 임시소독 및 정기소독 은 전문업체에 의뢰하 여 실시(행정실) |
| 방역물품 관리 | 연중 | 보건교사 행정실 교육복지실 | °마스크, 손소독제, 교실 소독제, 일회용 장갑 등 방 역물품 적정수량 비축 ° 마스크 우선순위 기준* 을 정하여 관리 °필요 시 교육복지대상 학생에게 일정 수량 배부 | 필요 시 추경 예산 집행 |

* 관련 지침에 따라 마스크는 원칙적으로 개인 지참이나, 호흡기 유증상자, 보건학적 고위험군 등이 마스크 미착용인 경우 지급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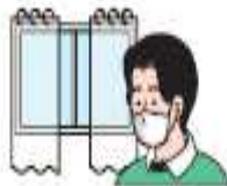
유증상자 행동수칙



유증상자: 발열이나 호흡기증상(기침이나 목아픔 등)이 나타난 자



등교·출근하지 말고 외출 자제하기



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고,
3-4일 경과를 관찰하기



38°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
① 콜센터(☎1339, ☎지역번호+120), 보건소로 문의
②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및 진료



의료기관 방문 시 자차 이용,
마스크 착용 필수



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
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여부 알리기